

심 사 보 고 서

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
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00
----------	-----

2024. 12. 11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최정훈 의원 등 7인
- 나.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- 다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- 라. 상정일자 : 2024년 11월 26일
 -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최정훈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시행으로 기존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,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명칭변경 :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유산 체제에 맞게 기관 명칭변경

(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→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)

- 제3조(사무소) : 부설기관 설치 조항 추가로 향후 사업영역 확장
- 제5조(사업) : 국가유산 체제에 맞게 기존 사업영역 확장
- 제6조(재원의 조성) : 출연금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-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명칭을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「국가유산기본법」의 제정에 따른 용어 불일치를 해소하고, 연구원의 역할을 충청북도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걸친 연구기관으로 재정립하는 데 적합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3조는 연구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유산 발굴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전반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될 경우 부설기관 설치 필요성은 인정됨.
- 안 제5조는 연구원의 사업을 각 호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타당함. 특히, 기존 역사문화의 발굴이나 조사 외에도 역사문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, 관련 시설 등의 위탁 운영 및 관리까지 아우르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<개정안 조문대비표>

현 행	전부개정조례안
<p>제5조(사업)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수탁사업 등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문화유산의 조사(지표조사, 발굴조사, 학술조사 등을 포함한다)와 연구 및 자료발간 2. 문화유산(지정문화재, 비지정문화재, 매장문화재를 포함한다)의 보호·관리 3.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수장 전시 4.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. 그 밖에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	<p>제5조(사업) 연구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역사문화의 발굴·조사·연구 2. 역사문화자원의 보존·관리·활용 3. 역사문화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. 역사문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5. 관련 시설 등의 위탁 운영 및 관리 6. 그 밖에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
- 안 제6조는 기존 출연금뿐만 아니라 용역 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, 지식재산권 등의 수익금 및 출판물 판매 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연구원의 재정 기반을 다각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<개정안 조문대비표>

현 행	전부개정조례안
<p>제6조(재산출연)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충청북도 및 시·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2. 출연을 원하는 기관·단체 및 기업체, 대학 등 기타 출연금 	<p>제6조(재원의 조성)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충청북도 및 시·군의 출연금·보조금·대행사업비 또는 현물 2. 개인·기관·단체 등의 출연금 3. 용역 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4. 지식재산권 등의 수익금 및 출판물 판매 대금 5. 교육 등 그 밖의 수입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」

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재단법인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연관된 역사문화의 체계적인 보존·관리·활용을 위한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격 및 명칭)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, 명칭은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(이하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 ①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둔다.

②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정관)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사업에 관한 사항
5. 설립자산 및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
6. 임원의 자격·정수·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
7. 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행사와 대표권에 관한 사항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9. 연구원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

10.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
11. 연구원의 조직 및 규정제정에 관한 사항
12.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를 경유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(사업) 연구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역사문화의 발굴·조사·연구
2. 역사문화자원의 보존·관리·활용
3. 역사문화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
4. 역사문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
5. 관련 시설 등의 위탁 운영 및 관리
6. 그 밖에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
제6조(재원의 조성)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충청북도 및 시·군의 출연금·보조금·대행사업비 또는 현물
2. 개인·기관·단체 등의 출연금
3. 용역 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
4. 지식재산권 등의 수익금 및 출판물 판매 대금
5. 교육 등 그 밖의 수입

제7조(사업계획 및 결산) ① 연구원은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·세출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세입·세출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, 결산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보고·검사 등)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비 등 지원)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

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제11조(잔여재산의 귀속) 연구원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귀속된다.

제12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 도지사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자료의 열람 및 제공)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연구원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열람토록 하거나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업의 위탁)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역사문화의 보존·관리·활용 등에 관련된 사업을 연구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.

제15조(비밀 준수 의무)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6조(다른 법령의 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「공익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 그리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